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

탈북 청소년
교육지원 및 복지정보

통일부

교육지원 프로그램

01
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… 05
-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(HOPE)
- 심리상담 지원
- 찾아가는 진로상담

02
남북하나재단 … 06
- 장학금
- 화상영어 교육
- 학습지(방문교사) 지원
- 진로진학 지도
- 탈북대학생 해외연수 지원
- 탈북대학생 디딤돌(예비)대학 운영
- 대학생 리더 교육

03
한국장학재단 … 08
- 멘토링 지원
-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

04
북한인권시민연합 … 09
- 한겨레계절학교
- 멘토링 지원
- 진로진학 지도

05
무지개청소년센터 … 10
- 레인보우스쿨
- 진로교육
- 심리상담 지원
- 장학금

06
교육시설 … 12
- 대안교육시설
- 방과후공부방

07
전국하나센터 … 14

08
꼭 필요한 지원내용 … 15

사회복지제도

01

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… 16

- 특례내용
- 급여신청 및 지급

02

교육급여와 교육비 … 17

- 지원내용
- 급여신청 및 지급

03

주거급여 … 18

- 지원내용
- 급여신청 및 지급

04

건강보험과 의료급여 … 19

- 지원내용
- 특례내용
- 급여신청 및 유의사항

교육지원 프로그램

01.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

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(HOPE)

- 예술과 과학 등에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지원
- 인문, 과학, 수학, 예술, 체육 등 전문가와 1:1 결연을 통한 교육
- 학년 초(4월경)에 신청

심리상담 지원

- 정착기 탈북청소년의 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
- 정착지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15회 이내의 심리상담 지원
- 수시 모집

찾아가는 진로상담

-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상담 지원
- 탈북청소년을 찾아가서 진로상담 실시
  ※ 대면(오프라인) 및 비대면(온라인) 상담 가능
- 수시 모집

※ 위의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.

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기관
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043)530-9481, 9482 http://www.hub4u.or.kr

02. 남북하나재단

장학금

-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생활비 보조 장학금을 일회성으로 지급
- 중·고생 100만원, 대학(원)생 200만원, 검정고시합격생 100만원 이내
- 일반학교에 다니는 탈북 중·고등학생 및 대학(원)생, 검정고시합격생 대상
- 상반기(3~4월경)와 하반기(9~10월경)에 신청(연 2회)

※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 기부금을 확보하게 되면,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(200만원 내외), 하반기에는 중고생 지원(단, 남한출생 불가)

화상영어 교육

- 원어민 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 향상 지원
-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어민과 화상 영어 교육(주 2~3회/60분)
- 만9세~만24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제3국 및 남한출생 포함) 대상
- 매년 초(1~2월)에 신청

학습지(방문교사) 지원

- 학습지 교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주 1회 1과목 지도
- 만3세~초등학생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제3국 및 남한출생 포함) 대상
- 매년 초(1~2월)에 신청

진로진학 지도

-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상담 등 지원
-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
- 매년 6~9월에 신청

※ 상황에 따라 온라인(비대면) 진로진학 상담 진행 가능

탈북대학생 해외연수 지원

풀브라이트 LTE(엘티이) 프로그램

- 미국 석·박사 과정 준비를 위한 연수 지원
- 탈북대학원생 및 대학 졸업(예정)생(제3국 및 남한출생 자녀 제외)
- 매년 6월경 모집

미국 WEST(웨스트) 프로그램

- 미국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
- 탈북대학생 또는 직전년도 여름학기 졸업생(제3국 및 남한출생 자녀 제외)
- 매년 2월경 모집

※ 위의 프로그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.

탈북대학생 디딤돌(예비)대학 운영

-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위탁 운영
- 학교생활 안내 및 국어·영어·컴퓨터 활용 등 교육 지원
- 탈북대학생(제3국 및 남한출생 포함, 휴학생은 제외) 대상
- 매년 3~12월에 신청

대학생 리더 교육

- 남북대학생 소통과 미래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
- 평화·통일 경진대회, 리더십프로그램, 동아리활동 지원
- 남북대학생 및 청년(제3국 및 남한출생 제외) 대상
- 매년 3~12월에 신청

탈북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총괄하는 공공기관
남북하나재단 대표번호 1577-6635 http://www.koreahana.or.kr

03. 한국장학재단

멘토링 지원

- 대학생 멘토와 연결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
- 영어·수학 등 학습지원, 그림·요리 등 정서지원, 진로탐색 등
  ※ 학교 방문멘토링 및 화상멘토링(온라인) 활동 중 선택
- 탈북 초·중·고등학생 *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하나센터, 지역아동센터 등 (남북하나재단 인증기관 기준)에 등록된 탈북청소년도 해당
- 탈북학생이 속한 초·중·고교 인근 대학에 "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멘티" 유선 문의(수시 신청)

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

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

-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·고등학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
- 중학생 월 25만원, 고등학생 월 35만원, 대학생 월 45만원
  ※ 대학생은 휴학할 경우, 복학할 때까지 장학금 지원 중단
- 중학교 2학년~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학생 대상
- 꿈장학금은 학교추천, 재능장학금은 학생 신청 가능(4~7월경)

SOS(에스오에스) 장학금

- 중학교 2학년~고교 3학년 재학생 중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한시적 장학금 지원

※ 위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.

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
여건 마련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
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290 http://www.kosaf.go.kr

04. 북한인권시민연합

한겨레계절학교

- 탈북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
- 17박 18일 동안 합숙하며 영어·수학 등 기초학습 및 멘토링 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매년 11~12월 경에 신청(계절학교는 차년도 1월에 운영)

멘토링 지원

- 영어·수학·한국어 등 주 1회 2시간 1:1 학습멘토링 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수시 신청

진로진학 지도

- 탈북청소년이 의미 있고 전망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
-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, 대학입시 준비 등 진로·진학 지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수시 신청

국내외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탈북청소년 및
제3국 출생 청소년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
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번호 02-723-1672 http://kor.nkhumanrights.or.kr

05. 무지개청소년센터

레인보우스쿨

-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 및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
- 한국어 교육, 특기적성 교육, 사회문화체험 등 지원
- 만9세~만24세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상반기(2~3월)와 하반기(8~9월)에 신청(연 2회)

진로교육

-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
- 자격증 취득 대비교육(바리스타, 미용, ITQ 등) 및 실습 진행
- 만9세~만24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상반기(2~3월)와 하반기(8~9월)에 신청(연 2회)

심리상담 지원

- 심리·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심리상담 지원
- 기관 방문 상담, 찾아가는 상담, 비대면 상담 등 가능
- 만9세~만24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수시 모집

장학금

친친무지개

-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(월50만원 내외) 지원
- 전국 만13세~만23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매년 3월경에 신청

챌린지UP(업)프로젝트

- 교육비(월30만원 내외), 1:1 멘토링 등 지원
- 중부지역(서울, 수도권, 강원, 충청) 탈북청소년(중학생)
- 매년 4월경에 신청

애경장학금지원

- 학비, 학원비 등(월23만원) 지원
- 서울 만16세~만20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
- 매년 5월경에 신청

※ 위의 프로그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.

북한이탈·중도입국·다문화 등
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공기관
무지개청소년센터 대표번호 02-722-2585 http://www.rainbowyouth.or.kr

06. 교육시설

대안교육시설

- 일반 학교에 편입학하기에 나이가 많거나, 학업 수준이 낮아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경우의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제3국 및 남한출생 포함) 대상

시설명	연락처	소재지	기타
드림학교	041-563-1934	충남 천안	고등학교 학력인가 (중졸 검정고시)
여명학교	02-888-1673	서울 중구	고등학교 학력인가 (중졸 검정고시)
하늘꿈중고등학교	031-758-2071	경기 성남	중·고등학교 학력인가
남북사랑학교	02-2688-0691	서울 구로	검정고시 등
다음학교	02-597-0204	서울 서초	검정고시 등
반석학교	02-3476-0283	서울 서초	검정고시 등
우리들학교	02-6015-6245	서울 관악	검정고시 등
장대현학교	051-974-0320	부산 강서	검정고시 등
한꿈학교	031-874-2156	경기 의정부	검정고시 등
해솔직업사관학교	033-263-2878	강원 춘천	직업교육, 검정고시

방과후공부방

- 탈북청소년의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돕는 시설
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제3국 및 남한출생 포함) 대상
- 전국 14곳 운영(남북하나재단 지원 시설)

시설명	연락처	소재지	기타
겨레얼학교지역아동센터	02-2602-9560	서울 양천	
금강지역아동센터	02-633-3675	서울 구로	
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	053-356-0463	대구 달서	
삼정지역아동센터	02-865-5570	서울 노원	
새꿈터지역아동센터	031-911-0611	경기 고양	
새일아카데미	02-537-5545	서울 동작	
성비전학교	031-655-8291	경기 평택	
우리두리하나돌봄센터	031-981-1468	경기 김포	
청주YMCA	043-235-6101	충북 청주	
큰미래지역아동센터	02-6487-8292	서울 강서	
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	02-895-0720	경기 광명	
한누리학교지역아동센터	02-2695-6507	서울 양천	
한민족학교	02-2607-9560	서울 양천	
한벗학교	031-968-7711	경기 고양	

탈북청소년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해 대안교육,
방과후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시설
교육시설 관련 문의(남북하나재단) 1577-6635

07. 전국하나센터

센터명	연락처
서울동부하나센터(대한적십사 서울지사)	02-882-5210~1
서울서부하나센터(가양7종합사회복지관)	02-2668-8600
서울남부하나센터(한빛종합사회복지관)	02-2690-8762
서울북부하나센터(공릉종합사회복지관)	02-975-2465
부산하나센터((사)부산YMCA 새터민지원센터)	051-441-2240
대구하나센터(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)	053-356-0463~4
인천하나센터(하이사회복지센터)	032-437-1173
광주하나센터((사)아시아밝음공동체)	062-951-0107
대전하나센터(생명종합사회복지관)	042-283-9191
울산하나센터(KVO국제봉사기구)	052-295-3161
경기동부하나센터(청솔종합사회복지관)	031-714-0125
경기서부하나센터(덕유사회복지관)	032-329-2325
경기서북부하나센터(남북하나재단)	031-908-6521
경기남부하나센터(평택YMCA)	031-656-2012
경기북부하나센터((사)평화와 함께)	031-853-1156
경기중부하나센터(선부종합사회복지관)	031-410-6070
강원남부하나센터(명륜종합사회복지관)	033-762-8131
강원북부하나센터(자유총연맹 강원지부)	033-253-6670
충북하나센터(충북사회복지협의회)	043-238-0840
충남하나센터(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)	041-415-1515
전북하나센터(전주YMCA)	063-227-7789
전남하나센터(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)	061-273-2141
경북하나센터(경북이주민센터)	054-444-8861
경남하나센터(대한적십사 경남지사)	055-263-4138
제주하나센터(남북하나재단)	064-723-2123

하나원 교육 수료시 하나원에서 정착 지역까지 안내하고,
정착 도우미 역할을 하는 시설(전국 25곳 운영)

08. 꼭 필요한 지원내용, 콕콕!

-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~

장학금 지원		
담당기관	지원내용	신청시기
남북하나재단	생활비 보조 장학금	3-4월/ 9-10월
한국장학재단	생활비 보조 장학금	4-7월/ 8-10월
무지개청소년센터	교육비, 학원비 등	3-5월

멘토링프로그램		
담당기관	지원내용	신청시기
탈북청소년교육 지원센터	잠재역량강화(HOPE)	4월
한국장학재단	멘토링(영·수·요리·미술)	수시
북한인권시민연합	멘토링(영·수·한국어)	수시

학력보충프로그램		
담당기관	지원내용	신청시기
남북하나재단	화상영어, 학습지 지원	1-2월
	디딤돌(예비)대학	3-12월
북한인권시민연합	계절학교(기초학습 캠프)	11-12월

특성화프로그램		
담당기관	지원내용	신청시기
남북하나재단	해외연수	2월(호주,미국)/ 6월(미국)
	대학생 리더교육(경진대회)	3-12월
탈북청소년교육 지원센터	심리상담	수시
무지개청소년센터	심리상담	수시
	레인보우스쿨(한국어)	2-3월/ 8-9월

진로진학		
담당기관	지원내용	신청시기
남북하나재단	진로진학 상담	6-9월
탈북청소년교육 지원센터	찾아가는 진로상담	수시
무지개청소년센터	진로교육(자격증취득)	2-3월/ 8-9월
북한인권시민연합	진로진학 지도	수시

01.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

○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특례적용하여 최저 생활비를 지원(「북한이탈주민법」 제26조)

특례내용

- 근로무능력자*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

  ※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
- 정착금(기본금,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)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

근로능력 없는 수급자(근로무능력자*) 판정기준

-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.
- 질병·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
- 20세 미만의 중·고교 재학생(재학증명서 첨부)-20세(2021년 기준, 2001년생)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근로능력자로 전환됨.

  ※ 한겨레중고등학교(북한이탈주민자녀)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곤란자로 판단

급여신청 및 지급

- 배정된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"기초생활수급비" 신청
- 최초 거주지 전입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

02. 교육급여와 교육비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 지원비를 지급

지원내용

- 기초생활수급자인 초·중·고등학생(일반학교 및 학력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재학생)은 교육급여 대상자인 동시에 교육비 대상자가 될 수 있음.
- 교육급여는 교재구입·원격교육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지급

  ※ 초등학생 28만 6천원, 중학생 37만 6천원, 고등학생 44만 8천원 지원 (2021년 기준)
- 교육비는 고교학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급식비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를 지원(시·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음.)

급여신청 및 지급

- 배정된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"교육급여"와 "교육비"를 각각 신청
-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, 신청일이 속한 달(月)부터 지원

03. 주거급여

○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 지급

지원내용

- 주택을 배정받은 수급권자에게 매달 주거급여를 지급
-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~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서 받을 수 있음. 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2021년부터 시행)

2021년 지원 상한액 (단위 : 원/월)

구분	1급지 (서울)	2급지 (경기·인천)	3급지 (광역시·세종시)	4급지 (그 외 지역)
1인	310,000	239,000	190,000	163,000
2인	348,000	268,000	212,000	183,000
3인	414,000	320,000	254,000	217,000
4인	480,000	371,000	294,000	253,000
5인	497,000	383,000	303,000	261,000
6~7인	588,000	453,000	359,000	309,000

급여신청 및 지급

- 배정된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, 부모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
04. 건강보험과 의료급여

○ 건강보험은 개인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고,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본인부담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

지원내용

-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, 건강보험의 종류에는 직장보험, 지역보험, 의료급여 등이 있음.
- 북한이탈주민은 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근거한 타법 적용으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음.

※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, 외래진료 방문 횟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,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(성형수술, 치과보철치료 등)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.

- 부양자(보호자)가 직장보험·지역보험 가입자라면, 외래진료 50%, 입원비 20%를 본인(탈북청소년)이 부담

특례내용(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 의료급여)

- 탈북청소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취업할 경우, "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"에 따라 중위소득 160% 이하('21년도 기준, 290만원 이하)를 받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(5년) 동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※ 다만, 승용차를 보유하면(장애인, 생계형은 제외) 재산으로 반영되어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.

급여신청 및 유의사항

- 하나원 퇴소일에 반드시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.
- 의료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1차→2차→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진료를 밟아서 진료를 받아야 함. 단계별 진료를 받지 않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를 비싸게 지불하게 됨.

※ 1차(보건소, 의원, 보건지소)→2차(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입원시설을 갖춘 준종합 병원)→3차(대학병원, 특수병원 등)

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

탈북 청소년
교육지원 및 복지정보

통일부

발행일 2020년 12월
발행처 통일부 하나원 교육훈련과
주　소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
전　화 (031)670-9489